#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79 발의연월일: 2021. 12. 20.

발 의 자:이광재・김경협・김병기

송재호・김주영・송옥주

최기상 • 어기구 • 안호영

김진표 · 강선우 · 박영순

허 영·유영덕·김영주

박홍근 · 임호선 · 이장섭

윤준병 · 강훈식 · 이탄희

변재일 · 허종식 · 서영석

김승원 의원(25명)

### 제안이유

전국 하천의 87.9%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,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 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.

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며,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.

따라서,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,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 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.

나아가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,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·집행·평가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고, 하천관리 정보체계도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.
  - 1) 하천 및 하천수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기술 기반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 도록 하천 관리원칙에 신설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  - 2) 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 술을 활용하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- 나.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  - 1)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및 댐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하천의 홍수량 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하천의 홍수위에 영향을 받는 하천, 도심지를 관류하여 홍수피해를 받는 인구가 많은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- 2)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 가지원 지방하천 관리(공사 및 유지보수)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 및 제27조의2 신설).
- 3)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(안 제 59조제2항 신설).
- 다.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의 치수, 이수,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(貫流)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문화공간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25조).

##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조의2(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  - 1.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는 하천 구간
  - 2. 국가하천 홍수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
  - 3. 댐 직하류 등 댐 방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하천
  - 4.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(貫流)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으로 체계적인 하천 정비와 신속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
  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・변경・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술, 인공지능 기술, 사물인터넷 기술, 클라우드 컴퓨 팅 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2항 전단 중 "대하여"를 "대하여 사전에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
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하천기본계획"을 "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기본계 획"으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, 이수,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, 특히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(貫流)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 공간조성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)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.
  -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・보수는 시・도지사가 시행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본다.
- 제3조(하천공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대하여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4조(하천관리의	원칙)	1.2	제4조(하천관리의 원칙) ①・②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
			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
			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과
			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여
			<u>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		제7조의2(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
			정)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
			과 지방하천간의 연계성 확보
			및 홍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
		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
			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지
			<u>방하천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</u>
			<u>다.</u>
			1.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을 받
			는 하천 구간
			2. 국가하천 홍수량에 지배적인
			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
			3. 댐 직하류 등 댐 방류로 인하
			여 영향을 받는 하천
			4.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의
			시가지를 관류(貫流)하거나
			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

제22조(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) 제22조(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) ① (생략) <신 설>

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 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「수자원의 조사・

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으 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신속 한 홍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 하천의 지정·변경·해제 및 고 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 우 빅데이터 분석기술, 인공지 능 기술, 사물인터넷 기술,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 등 최신의 정 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 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④ 제1항 및 제2항-----

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(생 략)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
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
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
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
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<u>대하</u>
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
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
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 <단
서 신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① <u>하천기본계획</u>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⑤ ~ ⑧ (생 략)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, 이수,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 하며, 특히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(貫流)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이를활용한 생태문화 공간조성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기본계획-----
- <u>⑥</u> ~ <u>⑨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8

	항까지와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2(국가지원 지방하천 공
	<u>사 및 유지보수) ① 제7조의2제</u>
	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
	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
	이 시행한다.
	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・
	보수는 시・도지사가 시행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
	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
	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
	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
	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제59조(비용부담의 원칙) (생 략)	제59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(현
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
	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
	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
	고의 부담으로 한다.